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과정

O 제출일자 : 2020. 11. 13.

O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
O 회부일자 : 2020. 11. 16.

○ 상정일자 :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0. 11. 25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세무과장 안 상 욱)

가. 제안이유

○ 조례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법령명 삽입 및 자구수정을 하고, 「개인 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및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별지 제7호, 8호, 9호의 서식을 정비함.

나. 주요내용

- O 제2조제1항제5호중 "법 제18조"를 "「지방세징수법」제18조"로 변경 및 자구 수정
- 별지 제7호, 8호, 9호 서식중 "주민번호"를 "생년월일"로 개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 일 희)

O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법령명 삽입, 자구수정

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및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